

#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44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5.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11. 28.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2005. 12. 12.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 2.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

### 3. 주요골자

-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 기금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
- 2006년도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지원 및 고성노인회 읍면분회 지원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계획안은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성군 사회복지 통합기금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06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518,224천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10,000천원, 고성노인회 읍면 분회지원 7,000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출계획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2,000천원이 감소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

- 문 : 사업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
- 답 : 적립금 이자수입 감소로 노인 취미교실 강사료 지원 10,000천원과 고성노인회 읍면 분회지원에 7,000천원 밖에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 문 : 노인복지기금을 농협에 예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 답 : 예치당시에 금리 관계 등으로 농협에 적립 하였습니다.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2005. 12.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